

특 허 법 원

제 2 2 부

판 결

사 건 2020나1810 등록디자인 침해 금지 등  
원고, 항소인 A

송달장소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규

피고, 피항소인 1. 주식회사 B

대표자 사내이사 C

2. 주식회사 D

대표이사 E

3. 주식회사 F

대표이사 G

4. 주식회사 H

대표이사 I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호수연

제 1 심 판 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9가합561956 판결  
변 론 종 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21. 4. 21.  
판 결 선 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21. 5. 14.

## 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'빙삭기용 얼음용기'를 생산, 사용, 양도, 대여,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제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(양도나 대여를 포함한다)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피고들의 주소지, 사무실, 공장, 창고, 판매점포, 대리점에 보관, 전시, 진열하고 있는 위 제품의 완성품, 반제품 및 제품에 관한 광고 선전물을 폐기하라.<sup>1)</sup>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66,552,097원 및 이에 대한 2020. 6. 18.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1) 원고는 폐기를 구하는 대상 중 '시작품, 부분품'에 대한 청구 부분을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피고들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였다. 그런데 제1심판결에는 이 부분이 착오로 그대로 기재되었고, 이에 원고가 당심에 제출한 항소장의 항소취지에도 이 부분이 그대로 기재되었다. 그러나 원고가 당심에서 이 부분을 다시 추가로 청구함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점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항소취지 중 이 부분은 단순한 착오기재로 보인다.

# 이 유

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9행 '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'을 '이 사건 등록디자인 또는 피고들 제품 디자인은'으로 고치고, 제1심판결 제8면 제18행 아래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 2. 추가 판단

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80후112호 판결을 원용하면서, 비록 개개의 모양이 공지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장식적 효과를 나타내고 그 결합이 상당한 지능적 고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신규의 고안이라 하여 보호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,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동심원 형태의 경계선 및 음각 또는 양각으로 돌출된 줄무늬가 일정한 간격으로 대칭되면서 여러 개 형성되는 부분은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이를 공지부분으로 분류하여 중요도를 낮게 보아서는 아니 되고, 나아가 위와 같은 색다른 심미감을 주는 부분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피고들 제품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, 유사하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위 대법원 80후112호 판결의 법리는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실시된 법리로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판단이 쟁점이 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될 수 없고,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지부분이 기존과는 다른 색다른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도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결국 이유 없다.

## 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.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   판사      김상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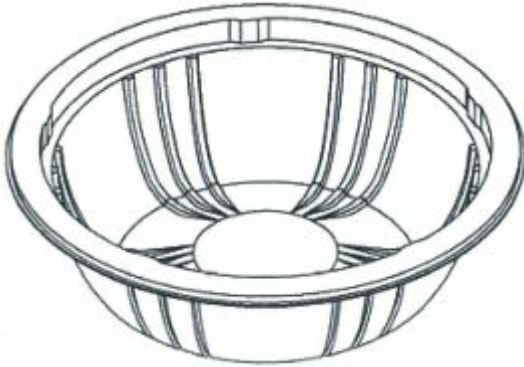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 이혜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 김영기

별지1

이 사건 등록디자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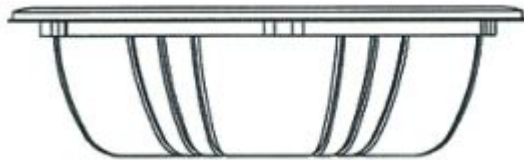
[도면 1.1 전체적인 형태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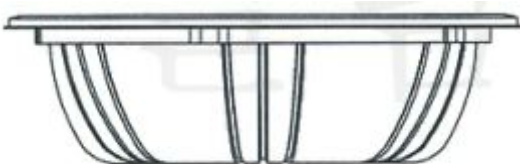
[도면 1.2 정면도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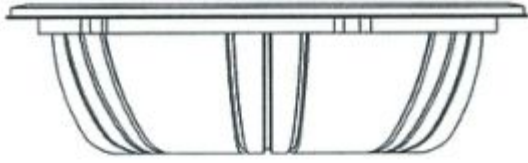
[도면 1.3 배면도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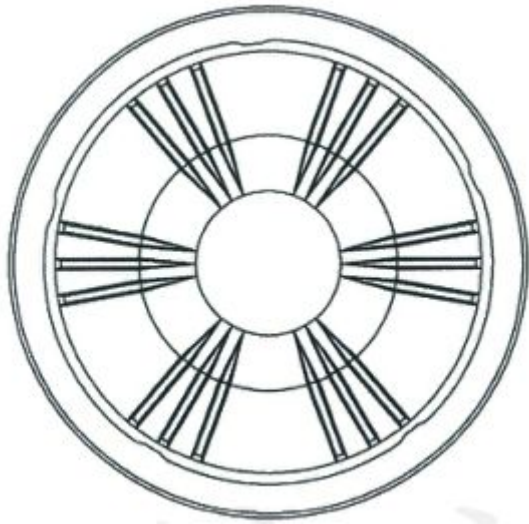
[도면 1.4 좌측면도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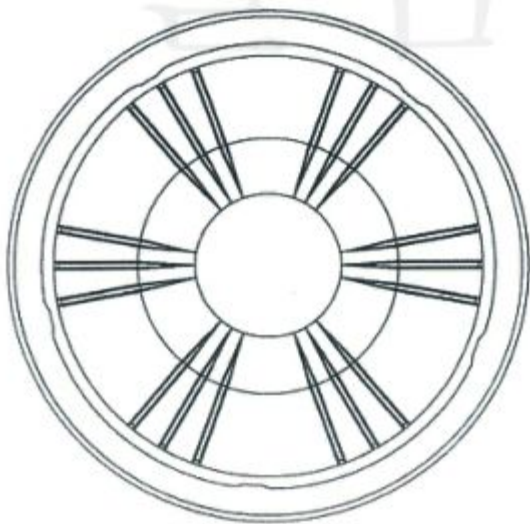
[도면 1.5 우측면도]



[도면 1.6 평면도]



[도면 1.7 저면도]



별지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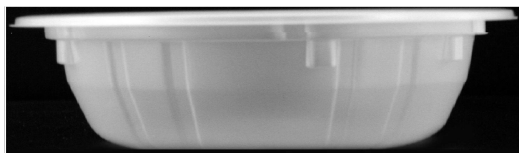
## 목 록

- 확인대상디자인의 물품: 빙삭기용 얼음용기
- 확인대상디자인의 설명: 재질은 합성수지재임
- 확인대상디자인의 실물 사진

[사진 1.1 전체적인 모습 사진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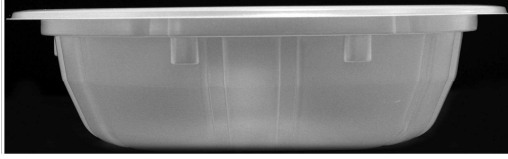
[사진 1.2 정면 사진]



[사진 1.3 배면 사진]



[사진 1.4 좌측면 사진]



[사진 1.5 우측면 사진]



[사진 1.6 평면도 사진]



[사진 1.7 저면 사진]

